

연론진흥기금

연기금투자플 주간운용사 자금배분 기준

제정 2013. 12. 26

개정 2018. 12. 17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“국가재정법” 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79조 및 “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” (이하 “통합운용규정” 이라 한다)에 따라 연기금투자플 주간운용사간 자금배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연기금투자플 위탁기관” (이하 “주간운용사”라 한다.)라 함은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.운용을 위하여 “법” 제81조에 따라 각 기금관리주체가 여유자금을 위탁할 수 있도록 선정된 금융기관을 말한다.
2. “투자플운영위원회”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라 함은 “통합운용규정” 제8조에 따른 연기금투자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·의결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.

제 2 장 주간운용사 자금배분

제3조(주간운용사 자금배분) ①주간운용사에 대한 자금배분을 위한 평가 및 배분비중 결정은 자산운용을 통한 수익성을 안정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.

②연간자산운용계획 수립 또는 자산운용지침 개정 시 주간운용사 자금배분 계획을 포함시킬

수 있으며, 주간운용사 자금배분 계획은 정기적인 재평가에 따라 비중을 변경할 수 있다.

③국내외 경제 및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산운용계획 변경 시 주간운용사 자금 배분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4조(배분대상 주간운용사) “법” 81조 및 “통합운용규정” 제3조5호가목에 따른 주간운용사로서 “위원회” 의 의결을 거쳐 선정된 주간운용사를 말한다.

제5조(주간운용사 평가) ①기금은 “통합운용규정” 에 따른 “위원회” 의 정기적 주간 운용사 선정 및 평가와 별도로 기금이 자금배분을 목적으로 주간운용사를 평가할 수 있다.

②기금의 주간운용사 평가는 별표1의 “주간운용사 세부 평가기준 “을 적용한다.

③주간운용사 평가는 운용사 단위 또는 상품유형별로 적용할 수 있다.

④기금은 주간운용사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외부 전문컨설팅 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대행할 수 있다.

제6조(주간운용사 자금배분 비중) ①주간운용사별 자금배분 비중은 제5조 2항에 따라 평가된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.

②평가점수에 따른 자금배분 기준은 연간 평균잔고를 기준으로 한다.

③기금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연간 자산운용계획안의 예상 운용평잔이 단기자금은 300억원, 중장기 자금은 100억원 이하일 경우 주간운용사의 운용규모 및 성과비교를 통해 단일 전담 주간운용사를 선정할 수 있다.

[평가점수에 따른 자금배분 비중]

점수 구간	배분비중(%)		비고
	고득점 주간운용사	저득점 주간운용사	
10 ≤ A-B	100	0	허용범위 ±10%p
5 ≤ A-B < 10	80	20	
2 ≤ A-B < 5	60	40	
A-B < 2	50	50	

제7조(주간운용사 자금회수) ①주간운용사별 자금회수는 제5조 2항에 따라 평가된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수한다.

※ 주간운용사별 자금회수 비율 = (100 - 해당 주간운용사의 평점) / [(100 - 주간운용사별 평점)의 합계]

②다만, 제6조의 기준에 따른 주간운용사별 자금배분 비율을 적정하게 조절하기 위해 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제1항의 자금회수 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8조(배분비중 조정) ①주간운용사별 자금배분 비중 조정은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배분 비중을 조정할 수 있다.

②분기 또는 수시 배분비중 조정의 경우 제5조 2항에 따라 평가된 결과에 따라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3 장 보 칙

제9조(평가기준의 변경) 주간운용사 평가기준은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변경한다.

제10조(기타사항) 급작스러운 금융환경의 변화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해 상기의 기준에 따라 주간운용사 평가 결과를 적정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컨설팅 기관의 자문을 통해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주간운용사를 평가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자산운용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이 기준은 201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(경과조치)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기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이 기준은 2018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(경과조치)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기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【별표1】

[주간운용사 평가기준]

평가항목	세부 평가항목	배점	세부 평가내용	
재무안정성 (30)	투자폴 수탁고 ¹⁾	20	채권형	5조원이상(10점), 3조원이상(8점), 1조원이상(6점), 1조원미만(4점)
			MMF	2조원이상(10점), 1조원이상(8점), 5,000억원이상(6점), 5,000억원미만(4점)
	자기자본비율 ²⁾	5	300%이상(5점), 200%이상(3점), 100%이상(1점), 100%미만(0점)	
	부채비율(부채총계/자본총계) ²⁾	5	50%미만(5점), 100%미만(3점), 150%미만(1점), 150%이상(0점)	
수수료 (15)	운용보수의 적정성(비용절감)	15	상대비교	
운용성과 (40)	BM 대비 초과 성과 ³⁾	20	최근 1년 유형별 BM대비 초과성과 모든 유형 중 BM대비 100% 초과 시 : 20점 65% 이상 초과 시 : 15점 35% 이하 초과 시 : 10점	
	위험조정수익률(샤프지수) ³⁾	20	최근 1년 유형별 업계평균 % 순위 (구간별 1점 단위 배분, 상위 30%이내, 50%이내, 70%이내)	
기금 서비스 (15)	자문 만족도(자산배분, 상품설계)	5	[참고] 서비스만족도 양식 ⁴⁾	
	투자폴 자산운용시스템 활용도	5		
	기금 교육지원 만족도	5		

* 심사자료는 주간운용사 제공자료 또는 연기금투자폴 월간성과평가보고서를 참고

주 1. 최근 분기말 기준

2. 최근결산기말 기준

3. 최근 1년이상 연기금투자폴 운용실적이 없는 경우 동일유형상품 운용실적으로 평가

4. 서비스만족도 평가는 실제 만족도 및 활용도를 기초로 산정하나 신규 주간사가 선정되는 경우 제안서 등 향후 계획 등을 참고하여 채점할 수 있음

1. 기금 자문 만족도(자산배분, 상품설계)

평 가 항 목

- 1) 주간운용사는 귀 기금의 자산배분안에 적합한 상품구조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과 자문을 수행하거나 수행계획이 적정한지?
- 2) 주간운용사는 귀 기금의 예탁자금 특성에 적합한 수익률과 위험구조를 가지는 상품설계 및 추천을 수행하거나 수행계획이 적정한지?
- 3) 주간운용사는 시장의 변화 등 중대한 요인이 발생한 경우 귀 기금에서 예탁 중인 상품에 대해 사후적인 관리 및 관리체계가 적정한지?
- 4) 귀 기금의 예탁상품에 대해 정기/비정기적 성과 및 위험보고를 충실히 수행하거나 수행체계가 적정한지?

2. 연기금투자플 자산운용시스템 활용도

조 사 문 항

- 1) 연기금투자플 자산운용시스템 내 각종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는 어느 정도입니까?
- 2) 연기금투자플 자산운용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편이성 및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 또는 제공 계획의 적정성은 어느 정도입니까?
- 3) 주간운용사는 귀 기금의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는지 또는 요구사항 반영 계획의 적정성은 어느 정도입니까?

3. 기금 교육지원 만족도

조 사 문 항

- 1) 주간운용사는 귀 기금을 대상으로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 교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또는 교육 계획의 적정성은?
- 2) 주간운용사에서 귀 기금을 대상으로 수행한 교육서비스는 기금운용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는지 또는 향후 계획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지?
- 3) 주간운용사는 귀 기금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는지 또는 요구사항 반영계획이 적절한지?